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가단51116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철

변 론 종 결 2022. 10. 4.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8. 12. 30.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86,412,7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412,7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매매참가인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E에 대한 영업보증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7. 7. 13.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 보험기간 2017. 7. 20.부터 2019. 7. 19.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D 대표이사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8. 10. 5. E을 상대로 D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존재아니함을 확인하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34537 채무부존재확인 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31827)에서 2020. 12. 18. “D와 E 사이의 2017. 7. 20.자 매매참가인 거래약정에 기한 D의 E에 대한 채무는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1. 6. 확정되었다.

다. E은 D의 민물장어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원고에게 2018. 7. 5. 통지하였고, 원고는 나.항 기재 소송 확정 후 2021. 2. 17. E에 보험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 F은 2018. 12. 3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 피고, 자녀들인 G, C이 있었고, G은 상속포기(2019. 4. 25. 신고수리)를 하였으며, C과 피고는 2018. 12.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2019. 7.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의 C에 대한 구상채권액은 2021. 12. 17. 현재 86,412,71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채권은 2021. 2. 17. 보험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이미 원고와 C 사이에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D는 2017. 9. 6.경, 2017. 10. 11.경 이미 장어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갑 제6호증)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인 2021. 2. 17.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결국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과 모친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이 피고와 사이에 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사건 소송 제기 1년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존재가 확인되었고, 달리 이행보증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C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6억 원 상당의 주식, 금원을 보유하고 있어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8. 10. 10. 이후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에 금원 입출금이 반복되었으나(별지 주식목록, 계좌내역 참조), 이를 통하여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만한 주식 또는 계좌잔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22. 7. 15. H주식 25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액 또한 알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C이 모친을 위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C이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선택한 이상 이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 7. 26. I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6,000,000원)을 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중 C 상속지분의 가액은 237,200,000원일 것으로 보이고(갑 제20호증),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86,412,716원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412,7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중랑구 [] [] [] [] [] [] []

[] [] 아파트 [] 동

[도로명주소]서울 중랑구 []

철근콘크리트구조, 벽식구조기타지붕, 칼라아스팔트엇경사지붕 12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중랑구 [] 대 3852.2㎡
2. 서울 중랑구 [] 대 334.6㎡
3. 서울 중랑구 [] 대 387.8㎡
4. 서울 중랑구 [] 대 1309.1㎡
5. 서울 중랑구 [] 대 494.9㎡
6. 서울 중랑구 [] 대 305.1㎡
7. 서울 중랑구 [] 대 277.4㎡
8. 서울 중랑구 [] 대 150.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74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 3852.2분의 43.62
2. 소유권 334.6분의 0.01
3. 소유권 387.8분의 0.01
4. 소유권 1309.1분의 0.01
5. 소유권 494.9분의 0.01
6. 소유권 305.1분의 0.01
7. 소유권 277.4분의 0.01
8. 소유권 150.6분의 0.01, 끝.

C 주식목록

종 목 명	매 수 일	매 도 일	보유 기간	비 고
<삭제처리>	2018.10.10.	2018.11.05	27일	·
	2018.10.19.	2018.11.07.	19일	·
	2019.03.25.	2019.04.19.	25일	·
	2019.04.01.	2019.04.09.	8일	·
	2019.04.03.	2019.04.04.	1일	·
	2019.06.20.	2019.07.02.	12일	·
	2019.06.27.	2019.07.02.	5일	·
	2019.07.02.	2019.07.04.	2일	·
	2019.08.01.	2019.08.16.	15일	·
	2019.08.02.	2019.08.08.	6일	·
	2019.09.05.	2019.09.06.	1일	·
	2019.10.10.	2019.10.10.	0일	·
	2019.10.11.	2019.10.22.	11일	·
	2019.11.04.	2020.12.03.	29일	·
	2020.02.03.	2020.02.05.	2일	·
	2020.02.05.	2020.02.05.	0일	·
	2020.03.27.	2020.04.24.	28일	·
	2020.04.13.	2020.09.02.	142일	·
	2020.04.29.	2020.04.29.	0일	·
	2020.05.04.	2020.05.13.	9일	·
	2020.05.11.	2020.06.04.	24일	·
	2020.05.14.	2020.05.19.	5일	·
	2020.05.19.	2020.05.20.	1일	·
	2020.05.20.	2020.05.22.	2일	·
	2020.06.15.	2020.07.10.	25일	·
	2020.09.15.	2020.10.22.	37일	·
	2020.09.16.	2020.10.06.	20일	·
	2020.09.17.	2020.09.24.	7일	·
	2020.09.24.	2020.12.09.	76일	·
	2020.10.12.	2020.10.16.	4일	·
	2020.10.12.	2020.10.19.	7일	·
	2020.10.19.	2020.11.24.	36일	·
	2020.10.23.	2020.10.27.	4일	·
	2020.12.08.	2020.12.17.	9일	·
	2020.12.11.	2020.12.17.	6일	·
	2021.01.14.	2021.01.15.	1일	·
	2021.01.15.	2021.01.25.	10일	·
	2021.02.22.	2021.02.24.	2일	·
	2021.02.25.	2021.02.26.	1일	·
	2021.03.12.	2021.03.19.	7일	·
	2021.03.19.	2021.04.14.	26일	·

<삭제처리>	2021.03.19.	2021.06.03.	76일	·
	2021.03.31.	2021.04.07.	7일	·
	2021.04.01.	2021.05.07.	36일	·
	2021.04.14.	2021.04.29.	15일	·
	2021.04.14.	2021.04.26.	12일	·
	2021.04.28.	2021.04.29.	1일	·
	2021.05.07.	2021.07.09.	63일	·
	2021.05.20.	2021.05.26.	6일	·
	2021.07.09.	2021.07.13.	4일	·
	2021.07.12.	2021.09.07.	57일	·
	2021.08.18.	2021.09.14.	27일	·
	2021.09.14.	2021.10.08.	24일	·
	2021.10.22.	2021.10.25.	3일	·
	2021.10.25.	2021.10.26.	1일	·
	2020.07.03.	2020.07.08.	5일	·
	2020.07.10.	2020.09.24.	76일	·
	2020.08.21.	2020.09.01.	11일	·
	2020.09.01.	2020.09.09.	8일	·
	2020.09.11.	2020.09.21.	10일	·
	2020.09.28.	2020.10.16.	18일	·
	2020.10.23.	2020.12.09.	47일	·
	2020.11.05.	2020.11.19.	14일	·
	2020.12.15.	2020.12.23.	8일	·
	2020.12.09.	2020.12.22.	13일	·
	2021.02.02.	2021.02.05.	3일	·
	2021.02.01.	2021.02.10.	9일	·
	2021.02.01.	2021.02.24.	23일	·
	2021.02.09.	2021.02.23.	14일	·
	2021.02.18.	2021.03.15.	25일	·
	2021.04.08.	2021.04.16.	8일	·
	2021.04.19.	2021.04.29.	10일	·
	2021.04.28.	2021.06.08.	41일	·
	2021.05.20.	2021.05.26.	6일	·
	2021.09.23.	2021.10.08.	15일	·
	2021.11.02.	2021.11.03.	1일	·
	2021.11.17.	2021.11.30.	13일	·
	2021.12.07.	2021.12.27.	20일	·
	2022.04.07.	2022.04.12.	5일	·
	2020.11.18.	2021.01.04.	48일	·

C 계좌내역

입 금 일	출 금 일	입금 후 현금잔액	출금 후 현금잔액	보유기간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	.	.
2018.10.10.	2018.10.10.	323,811,163원	0원	0일
2018.10.19.	2018.10.22.	150,001,699원	2,795원	3일
2018.11.27.	2018.11.30.	107,872,905원	0원	3일
2019.01.30.	2019.02.01.	200,111,928원	-18,896,106원	2일
2019.03.29.	2019.04.01.	268,714,270원	0원	3일
2019.04.01.	2019.04.02.	247,991,714원	0원	1일
2019.07.08.	2019.07.08.	127,370,507원	0원	0일
2019.08.01.	2019.08.02.	153,451,584원	0원	1일
2020.01.22.	2020.01.22.	389,295,588원	295,588원	0일
2020.03.25.	2020.03.27.	200,000,000원	0원	2일
2020.04.08.	2020.04.13.	500,000,000원	0원	5일
2020.04.13.	2020.04.14.	307,434,913원	0원	1일
2020.05.15.	2020.05.19.	201,635,801원	0원	4일
2020.05.19.	2020.05.19.	273,323,412원	0원	0일
2020.09.08.	2020.09.09.	352,706,911원	0원	1일
2020.09.18.	2020.09.23.	611,022,093원	0원	5일
2020.09.23.	2020.09.23.	658,914,104원	0원	0일
2020.09.23.	2020.09.24.	184,714,465원	0원	1일
2020.10.12.	2020.10.12.	186,065,842원	0원	0일
2020.12.08.	2020.12.08.	324,281,603원	0원	0일
2021.02.24.	2021.02.24.	119,145,645원	0원	0일
2021.03.15.	2021.03.15.	300,281,790원	0원	0일
2021.04.29.	2021.04.29.	110,813,158원	0원	0일
2021.07.09.	2021.07.09.	322,256,624원	0원	0일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	.	.

2020.06.03.	2020.06.03.	1,100,000,000원	0원	0일
2020.07.09.	2020.07.09.	365,608,184원	0원	0일
2020.11.03.	2020.11.05.	200,098,508원	0원	2일
2020.12.23.	2020.12.24.	332,596,725원	0원	1일
2021.02.01.	2021.02.01.	436,129,504원	0원	0일
2021.03.24.	2021.03.25.	183,636,388원	0원	1일
2021.06.08.	2021.06.09.	296,738,553원	0원	1일
2021.08.18.	2021.08.18.	295,319,489원	0원	0일
2021.12.07.	2021.12.07.	102,295,412원	0원	0일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2020.11.16.	2020.11.18.	1,000,000,000원	0원	2일
2020.12.31.	2020.12.31.	738,009,278원	9,278원	0일
2021.09.28.	2021.09.28.	240,000,000원	0원	0일

